

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02. 10(월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01. 21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01. 23

라. 상정일자 : 2014. 02. 10(제21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
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동항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,
- 지진발생 시 지진재해의 원인조사·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줄이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진피해조사의 실시, 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·운영 및 임무 등에

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)

- 지진피해조사의 시기,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
- 다른 시도와의 지원 및 조사단에 대한 경비지원 사항을 정함. (안 제9조 및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제정 조례안은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0조 제5항에 의거,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
-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진발생시 지진재해의 원인을 조사·분석하고 평가하여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.
- 다만, 최근 지진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마련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바,
- 지진 피해발생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13년부터 시행중인 「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‘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’운영현황에 대한 설명과 동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인천광역시의 전반적인 지진재해 대응체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이용범 위원>

○ 타 시도 조례 제정은 ?

⇒ 중앙에서 준칙안 내려와 전시도가 동일하게 추진되는 사항임.

○ 위원회 구성은?

⇒ 30명 내외, 피해조사단은 순수한 피해조사만 수행

○ 수당은?

⇒ 규정에 의하여 지급예정. 아직은 미정. 기존 사례를 보면 5~10만원

<차준택 위원>

○ 관련 예산 편성은?

⇒ 사건이 발생되어야 운영되므로 예비비로 사용해야 할 듯 함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이용범, 차준택, 최용덕, 류수용, 이강호, 이상철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: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발생 시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지진피해조사”란 지진발생 시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지진피해조사단”이란 지진피해조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말한다.
3. “지진피해조사단원”이란 지질·건축·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지진피해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지진피해조사 실시)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“지역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진피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.

1. 규모 5.0 이상의 지진발생 시
2. 규모 5.0 이하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·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

3. 해저지진으로 인하여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
4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
5.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4조(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·운영 등) ① 지역본부장은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(이하 “조사단”이라 한다)을 관련 학회·협회 등의 산·학·연 전문가로 사전에 구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조사단의 단장(이하 “조사단장”이라 한다)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역본부장이 위촉하며,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별표 1 “지진피해조사단 편성기준”에 의한 관련 학회·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
2.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 조사단장은 지진피해조사 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진피해의 규모 및 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조사단의 임무) 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·분석에 관한 사항
2.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3. 「지진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
4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진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지역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6조(지진피해조사 시기)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

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피해조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지진피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현지조사)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 기간·지역·인원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지진피해조사 계획을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현지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장비·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지진피해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)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진피해조사 초동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최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·완료하고,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점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·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지진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원요청 등) ①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조사단원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지역본부장은 다른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피해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조사단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경비지원) 지역본부장은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조사단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지진피해조사단 편성기준(제4조제2항 관련)

분 과	자격 및 인원	관련 학회·협회	비 고
지진현상규명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대한지질학회 - 한국지진공학회 등	
건축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대한건축학회 등	
교통시설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대한교통학회 등	
상·하수도 및 환경시설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한국상하수도협회 등	
산업·통신시설	- 대학교수 각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각 2명 이상	- 한국방재협회 - 한국방재학회 - 한국통신학회 등	
수리시설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한국수자원학회 등	
원자력시설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한국원자력학회 등	
항만시설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등	
지반·토목시설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대한토목학회 - 한국지반공학회 등	

[별지 제1호 서식]

지진피해조사 초동보고서

I. 조사 개요

- 가. 목적
- 나. 조사기간
- 다. 조사지역
- 라. 조사단

II. 조사내용 및 원인분석

- 가. 조사내용(피해발생 현황 등)
- 나. 원인분석

III. 현지조사 시 문제점 및 특이사항

IV. 최종결과보고 방향

[별지 제2호 서식]

지진피해조사 최종보고서

I. 조사 개요

- 가. 목적
- 나. 조사기간
- 다. 조사지역
- 라. 조사단
- 마. 주요 조사내용

II. 지진현황 및 특성

- 가. 지진현황
- 나. 금번 지진의 특성 및 원인

III. 현지조사 결과

- 가. 지진피해 총괄
- 나. 현장조사 내용
 - 1. 시설별 피해 내용
 - 2. 지역별 피해 내용
 - 3. 지진 발생시 지자체의 대응 및 활동사항
- 다.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

IV. 지진피해 교훈 및 시사점

V. 국가지진방재정책 개선방향

VI. 결언

부록 : 화보